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 14 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13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회계법인 정연

목 차

| | |
|----------------------|---|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
| (첨부)재무제표 | 4 |
| 재무상태표 | 5 |
| 운영성과표 | 6 |
| 순자산변동표 | 7 |
| 현금흐름표 | 8 |
| 주석 | 9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5년 12월 31일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25년 12월 31일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재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

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91

회 계 법 인 정 연

대 표 이 사 김 석 로

2026년 2월 1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6년 2월 1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제 14 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13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이사장 서동욱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20

(전 화) 052-226-1999

재무상태표

제 14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3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단위 : 원)

| 과목 | 제 14 (당) 기 | 제 13 (전) 기 |
|--------------------|---------------|---------------|
| 자 산 | | |
| I. 유동자산 | 828,847,277 | 938,613,575 |
| (1) 당좌자산 | 828,847,277 | 938,613,575 |
|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10) | 624,936,065 | 737,819,575 |
| 2. 단기투자자산(주석3) | 200,000,000 | 200,000,000 |
| 3. 미수금 | 3,911,212 | 794,000 |
| II. 비유동자산 | 244,067,000 | 380,901,167 |
| (1) 투자자산 | - | - |
| (2) 유형자산(주석4,9) | 244,067,000 | 380,901,167 |
| 1. 차량운반구 | 42,712,000 | 42,712,000 |
| 감가상각누계액 | (42,710,001) | (39,995,467) |
| 2. 비품 | 865,409,690 | 840,289,790 |
| 감가상각누계액 | (621,344,689) | (462,105,156) |
| 자 산 총 계 | 1,072,914,277 | 1,319,514,742 |
| 부 채 | | |
| I. 유동부채 | 624,936,065 | 738,613,575 |
| 1. 예수금 | 23,724,007 | 18,737,900 |
| 2. 미지급금 | 601,212,058 | 716,060,435 |
| 3. 미지급비용 | - | 3,815,240 |
| II. 비유동부채 | 86,511,326 | 108,021,480 |
| 1.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5,9) | 381,617,440 | 367,432,008 |
| 퇴직연금운용자산(주석5) | (295,106,114) | (259,410,528) |
| 부 채 총 계 | 711,447,391 | 846,635,055 |
| 순 자 산 | | |
| I. 기본순자산 | 200,000,000 | 200,000,000 |
| 1. 지자체출연기본재산(주석6) | 200,000,000 | 200,000,000 |
| II. 보통순자산(주석7) | 161,466,886 | 272,879,687 |
| 1. 이익잉여금 | 161,466,886 | 272,879,687 |
| 순 자 산 총 계 | 361,466,886 | 472,879,687 |
| 부 채 와 순 자 산 총 계 | 1,072,914,277 | 1,319,514,742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제 14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단위 : 원)

| 과 목 | 제 14 (당) 기 | | 제 13 (전) 기 | |
|-----------------|---------------|---------------|---------------|---------------|
| I. 사업수익(주석8,9) | | 5,616,821,569 | | 5,809,703,935 |
| 1. 대행사업수익 | 4,200,619,584 | | 4,328,163,464 | |
| 2. 출연금수익 | 1,416,201,985 | | 1,481,540,471 | |
| II. 사업비용 | | 5,744,654,790 | | 5,986,050,473 |
| 1. 직원급여 | 1,182,020,546 | | 1,219,405,480 | |
| 2. 퇴직급여(주석5,9) | 94,540,722 | | 115,545,620 | |
| 3. 복리후생비 | 87,630,130 | | 114,246,380 | |
| 4. 여비교통비 | 13,582,746 | | 33,321,550 | |
| 5. 업무추진비 | 10,318,030 | | 14,574,696 | |
| 6. 감가상각비(주석4,9) | 161,954,067 | | 162,215,235 | |
| 7. 수선유지비 | 164,566,099 | | 301,111,940 | |
| 8. 지급임차료 | 71,269,840 | | 58,269,720 | |
| 9. 소모품비 | 29,717,170 | | 17,967,880 | |
| 10. 사무운영비 | 338,509,070 | | 316,994,025 | |
| 11. 공공운영비 | 123,501,090 | | 622,424,202 | |
| 12. 부서업무비 | 5,035,120 | | 1,698,960 | |
| 13. 행사운영비 | 3,190,676,420 | | 2,731,907,205 | |
| 14. 수도광열비 | 100,812,310 | | 103,085,060 | |
| 15. 지급수수료 | 136,475,100 | | 132,956,600 | |
| 16. 회의운영비 | 4,243,730 | | 8,638,040 | |
| 17. 시설장비비 | 29,802,600 | | 31,687,880 | |
| III. 사업이익(손실) | | (127,833,221) | | (176,346,538) |
| IV. 사업외수익 | | 16,420,420 | | 17,450,017 |
| 1. 이자수익(주석9) | 16,420,420 | | 17,450,017 | |
| V. 사업외비용 | | - | | - |
| VI. 당기순이익(손실) | | (111,412,801) | | (158,896,521)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순 자산 변동 표

제 14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 2024. 1. 1 (보고금액) | 200,000,000 | 431,776,208 | 631,776,208 |
| 당기순이익 | - | (158,896,521) | (158,896,521) |
| 2024. 12. 31 | 200,000,000 | 272,879,687 | 472,879,687 |
| 2025. 1. 1 (보고금액) | 200,000,000 | 272,879,687 | 472,879,687 |
| 당기순이익(손실) | - | (111,412,801) | (111,412,801) |
| 2025. 12. 31 | 200,000,000 | 161,466,886 | 361,466,886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금흐름표

제 14 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3 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거래문화재단

(단위 : 원)

| 과 목 | 제 14 (당) 기 | | 제 13 (전) 기 |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87,763,610) | | 5,572,832 |
| 1. 당기순이익(손실) | (111,412,801) | | (158,896,521) | |
|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 256,494,789 | | 277,760,855 | |
| 가. 감가상각비 | 161,954,067 | | 162,215,235 | |
| 나. 퇴직급여 | 94,540,722 | | 115,545,620 | |
| 다.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 - | | - | |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232,845,598) | | (113,291,502) | |
| 가. 미수금의 감소(증가) | (3,117,212) | | (794,000) | |
| 나.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14,848,377) | | 68,114,902 | |
| 다.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3,815,240) | | (71,704,760) | |
| 라.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감소(증가) | (35,695,586) | | (53,463,354) | |
| 마. 예수금의 증가(감소) | 4,986,107 | | (3,371,910) | |
| 바. 퇴직금의 지급 | (80,355,290) | | (52,072,380)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25,119,900) | | (13,328,600)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5,119,900) | | (13,328,600) | |
| 가. 비품의 취득 | 25,119,900 | | 13,328,600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 - | |
| IV. 현금의 증가(감소)(I+II+III) | | (112,883,510) | | (7,755,768) |
| V. 기초의 현금 | | 737,819,575 | | 745,575,343 |
| VI. 기말의 현금 | | 624,936,065 | | 737,819,575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14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3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1. 재단의 개요

재단법인고래문화재단 (이하 “ 재단”)은 2012년 3월 7일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출자출연기관법과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고래축제 및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구민의 문화 복지 증대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단은 울산고래축제 기획 및 운영, 남구 거리음악회 기획 및 운영, 장생포문화창고, 장생포문화예술 창작촌 사업 (3개소) 등 구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남구청장으로부터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단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며, 일반회계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 예산승인 및 결산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모든 수입 및 지출을 예산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9조에 의하여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수익의 인식

재단의 운영수입은 울산고래축제 및 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남구청으로부터 운영비로 교부받은 출연금 및 재단의 임시적 수입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익은 출연금수익, 위탁사업수익, 보조금수익, 금융자산수익(이자수익), 기타사업수익(대관료 수입, 전시관람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일 현재 수익으로 인식한 출연금과 보조금, 위탁사업비, 위탁운영 수입 등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의 집행잔액은 유동부채로 계상후 전액 남구청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

가. 공통사항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을 제외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유가증권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을 제외한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당사가 금융자산 양도 후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을 때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유가증권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에 대해서 취득하는 시점에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매 보고기간말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후속 측정시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평가하고, 만기보유증권의 만기액면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증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

권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치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양도로 당사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나, 통제를 상실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거래를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재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영진

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동 지출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연 수 |
|-------|---------|
| 비 품 | 5년 |
| 차량운반구 | 5년 |

(7) 퇴직급여충당부채

재단은 재무제표일 현재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는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재단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총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단은 임직원의 퇴직시 퇴직금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보험금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8) 납입자본

재단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전액 출연하여 지자체출연기본재산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9) 자산손상

금융자산, 건설형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당사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합니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환입하고 있으며,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재단은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 이로 인한 영향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과목을 수정하며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시에는 관련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3.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과 목 | 사용제한내역 | 금 액 | | 금융기관 |
|--------|--------|-------------|-------------|------|
| | | 당 기 | 전 기 | |
| 단기금융상품 | 기본재산 | 200,000,000 | 200,000,000 | 농협은행 |

4. 유형자산

(1) 당기 중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처 분 | 감가상각비 | 기 말 |
|-------|-------------|----------|-----|---------------|-------------|
| 차량운반구 | 2,716,533 | - | - | (2,714,534) | 1,999 |
| 비 품 | 378,184,634 | 25119900 | - | (159,239,533) | 244,065,001 |
| 합 계 | 380,901,167 | 25119900 | - | (161,954,067) | 244,067,000 |

(2) 전기 중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처 분 | 감가상각비 | 기 말 |
|-------|-------------|------------|-----|-------------|-------------|
| 차량운반구 | 5,678,933 | - | - | 2,962,400 | 2,716,533 |
| 비 품 | 524,108,869 | 13,328,600 | - | 159,252,835 | 378,184,634 |
| 합 계 | 529,787,802 | 13,328,600 | - | 162,215,235 | 380,901,167 |

5.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및 전기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액과 지급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기 초 잔 액 | 367,432,008 | 303,958,768 |
| 기중설정액 | 94,540,722 | 115,545,620 |
| 기중지급액 | (80,355,290) | (52,072,380) |
| 기 말 잔 액 | 381,617,440 | |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관련하여 납입된 퇴직연금운용자산 금액은 각각 295,106,114원과 259,410,528원입니다.

6. 기본재산

당기말 현재 재단의 기본재산은 200,000,000원으로서 전액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출연한 것입니다.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단위 : 원)

| 과 목 | 제 14 (당) 기 | | 제 13 (전) 기 |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 161,466,886 | | 272,879,687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72,879,687 | | 431,776,208 | |
| 2. 당기순이익(손실) | (111,412,801) | | (158,896,521) |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161,466,886 | | 272,879,687 |

8. 사업수익

당기 및 전기의 사업수익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정부출연금수익 | 1,782,081,000 | 1,777,170,000 |
| 국고보조금수익 | 4,430,455,788 | 4,740,388,000 |
| 출연금집행잔액 반납 | (365,879,015) | (295,629,529) |
|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납 | (229,826,204) | (412,224,536) |
| 사업수익계 | 5,616,831,569 | 5,809,703,935 |

9.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주요 차이 명세서

(1) 당기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의 주요차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과 목 | 재무제표 | 예산결산 | 차이 | 내 역 |
|-------------------|---------------|---------------|---------------|------------------------|
| | A | B | (A-B) | |
| 지자체출연금 및 국고보조금 수익 | 5,616,831,569 | 6,212,536,788 | (595,705,219) | 사업비 반납액으로 인한 차이임 |
| 퇴직급여 | 94,540,722 | 108,008,000 | (13,467,278) | 퇴직급여추계액 초과분 환입 |
| 감가상각비 | 161,954,067 | - | 161,954,067 | 비품 및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인식 |
| 이자수익 | 16,420,420 | 8,377,544 | 8,042,876 | 퇴직연금운용자산등의 이자 발생액 수익인식 |

(2) 전기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의 주요차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과 목 | 재무제표 | 예산결산 | 차이 | 내 역 |
|-------------------|---------------|---------------|---------------|------------------------|
| | A | B | (A-B) | |
| 지자체출연금 및 국고보조금 수익 | 5,809,703,935 | 6,517,558,000 | (707,854,065) | 사업비 반납액으로 인한 차이임 |
| 퇴직급여 | 115,545,621 | 97,597,000 | 17,948,621 | 퇴직급여 추계액 미달액 추가설정 |
| 감가상각비 | 162,215,235 | - | 162,215,235 | 비품 및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인식 |
| 이자수익 | 17,450,017 | 9,508,283 | 7,941,734 | 퇴직연금운용자산등의 이자 발생액 수익인식 |

10. 현금흐름표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한편, 현금흐름표 상 현금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입니다.